

대법원 2018도2098

무안군수 뇌물수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김창석)은 2018. 4. 10. 무안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서 **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,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원, 추징 4,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**하였음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8도2098 판결)

1. 사안의 내용

■ 공소사실의 요지

-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이 2012년 6월 중순경 ○○○으로부터 △△△의 6급 승진을 부탁받으며 △△△의 승진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2,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
- 무안군에서 발주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이 2015년 4월 하순경 군수 집무실에서 ●●●(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지방 6급 공무원)으로부터 세화엔지니어링이 교부한 인사비 명목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보고받고, ▲▲▲(피고인의 수행비서)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며, ▲▲▲에게 이를 받아 보관하도록 지시한 후 5월 16일경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등 교체비 명목으로 194만 원을 사용하고, 나머지 806만 원을 김진호로부터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
- 무안군에서 발주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이 2016. 4. 25.경 군수 집무실에서 ●●●으로부터 세화엔지니어링이 교부한 인사비 명목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보고받고, ▲▲▲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며, ▲▲▲에게 이를 받아 보관하도록 지시한 후 5월경

피고인의 배우자에게 1,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

■ 사안의 경과

● 원심 :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원, 추징 4,500만 원

- 피고인에게 승진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,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서열과 다르게 승진 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으며,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이 사건 금원이 전달·교부되었고,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전달자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았음
- 피고인이 무안군에서 발주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용역비 지급 최종 결정권자이고, 이 사건 금원이 지적재조사 사업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된 뒤 용역비가 지급되기 이전에 전달·교부되었으며,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수행비서에게 맡기라고 지시하였음
- 제1심에서 모두 자백하였음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
-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지
-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는지

나. 판결 결과

- 상고기각(유죄 확정)

다. 판단 근거

-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음
-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

3. 판결의 의의

- ▣ 피고인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원, 4,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한 사례임